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8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9.

발 의 자 : 소병훈 · 장종태 · 윤준병

조계원 · 박상혁 · 박용갑

이병진 · 전종덕 · 박 정

강득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은 개인적 · 가정적 · 교육적 · 사회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며,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 ·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만 정의하고 있음. 이러한 개념 정의는 위기청소년이 발생하는 다양한 요인과 조기 발굴 및 보호 · 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와 보호 · 지원 정책 또한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위기청소년의 정의 규정에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발생 요인과

조기 발굴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위기청소년
보호·지원 정책 수립 시 위기청소년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이 보
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4호).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”를 “개인적·가정적·교육적·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상황에 있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“위기청소년”이란 <u>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개인적 · 가정적 · 교육적 ·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위기상황에 있거나 위기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으로서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.</u>
5. · 6. (생 략)	5. · 6. (현행과 같음)